

## &lt; 변경 대비표 &gt;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트리플알파증권모투자신탁[채권혼합]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9.12.27
3. 주요 정정사항 :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 등

## [신탁계약서] :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정정 전	정정 후
제9조(수익권의 분할)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<u>표시한다.</u> ② <생략>	제9조(수익권의 분할)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<u>발행한다.</u> ② <현행과 같음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수익증권 발행가액</u>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<u>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u> ② ~ ④ <생략>	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</u>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<u>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u> ② ~ ④ <현행과 같음>
제14조(수익자명부)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에 위탁하여야 한다.  ② 집합투자업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③ <생략>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⑤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1. ~ 2. <생략>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⑦ ~ ⑧ <생략>	제14조(수익자명부)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 기관</u> 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전자등록기관</u> 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③ <생략>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 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⑤ <u>전자등록기관</u> 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1. ~ 2. <현행과 같음>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전자등록기관</u> 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⑦ ~ ⑧ <현행과 같음>
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 ① ~ ② <생략>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	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 ① ~ ② <현행과 같음>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 ① ~ ② <생 략>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	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 ① ~ ② <현행과 같음>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 ~ ⑤ <생 략>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<단서 생략>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<단서 생략> ⑧ ~ ⑨ <생 략>	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 ~ ⑤ <현행과 같음>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<단서 현행과 같음>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<단서 현행과 같음> ⑧ ~ ⑨ <현행과 같음>

## [변경등록신청서] :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 등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	기준일 현재 갱신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위험관리전략 정정	- 운용역 개인의 독단에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, 위험관리위원회 등에 서 결정하며,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당사 <u>내부의 운용업실무에 정해진 표준업무처리 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리스크</u>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.	운용역 개인의 독단에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, 위험관리위원회 등에 서 결정합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	-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<u>1.21%</u> <u>수준</u> 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 등급은 5등급(낮은 위험)에 해당하지만, .....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<sup>보통</sup> 수준인 <u>4등급 (보통 위험)</u> 으로 분류 합니다.	-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<u>1.51%</u> <u>수준</u> 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 등급은 5등급(낮은 위험)에 해당하지만, .....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<sup>보통</sup> 수준인 <u>4등급 (보통 위험)</u> 으로 분류 합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	-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-	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	기준일 현재 갱신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 사항 반영	<p>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 방법</p> <p>① 수익자총회의 소집</p> <p>-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위탁하여야 하며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</p>	<p>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 방법</p> <p>① 수익자총회의 소집</p> <p>-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위탁하여야 하며,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</p>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 해지		<p>②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	<p>②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
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자산운용보고서 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		<p>④ 집합투자업자는 ...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&lt;단서 생략&gt;</p> <p>신탁업자는 ... 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되 ...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&lt;단서 생략&gt;</p>	<p>④ 집합투자업자는 ...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&lt;단서 생략&gt;</p> <p>신탁업자는 ... 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되 ...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&lt;단서 현행과 같음 &gt;</p>